

의안번호	2201442
의 퇴 인	최형두 의원
회 답 일	2024. 9. 13.
추계번호	24D153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섬지역의 여객 운송을 위해 활용하는 행정선의 구입·건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58억 5,000만원, 2030년 63억 5,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04억 9,700만원(연평균 60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행정선 구입·건조 비용 지원 (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5,850	5,973	6,098	6,226	6,350	30,497	6,099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등의 의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의무규정
2	안 제13조의3 제3항 신설(교통편의 증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구입·건조·수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섬지역 주민의 → (개정안) 섬지역의	재량규정
3	안 제13조의4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등)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촉진구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섬발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3조의8 (개발부담금 면제)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의무규정

5	안 제13조의9 (국유·공유재산 의 사용 및 대부 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3조의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 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발전촉진구역 내 폐교재산을 귀농어· 귀촌 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 우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3조의 11(용자)	국가는 섬발전촉진구역의 복지·의료·문화·교육 여건을 개선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 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설치 및 운영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의2(실시계획 의 승인) 및 제9조의3 (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등의 의제)	-	미대상: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 실시 이전에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를 받게 되더라도, 총 개발 사 업비의 증가 등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안 제13조의3제3항 신 설(교통편의 증진 지원)	○	-
3	안 제13조의4(섬발전 촉진구역 지정 등)	×	시·도의 섬발전촉진구역의 신청 시기 및 신청 건수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섬발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관 련 사업의 규모·내용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
4	안 제13조의8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부담금 면제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5	안 제13조의9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의 특례)	×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6	안 제13조의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을 위한 특별법」에 관 한 특례)	×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7	안 제13조의11(용자)	×	용자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3조의3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구입·건조·수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행정선¹⁾을 운영하고 있는 섬의 경우 추가적인 행정선의 구입·건조는 발생하지 않으며, 지정섬²⁾ 중 여객선·노돛길·연륙교·행정선 등 대체수단이 없는 섬 35개³⁾에 대하여 1척씩 신규 선박을 구입·건조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지원한다고 가정함
- 추계기간 동안 총 35척의 행정선을 5년 동안 매년 7척씩 5톤급 선박으로 구입·건조하되, 1척당 구입·건조 비용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8억원으로 가정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행정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은 주민 수가 많지 않아 5톤 선박을 구입·건조해도 여객 운송이 가능⁴⁾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척당 8억원임
- 행정선의 수리비용은 해양수산부가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⁵⁾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리비용은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1)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3) 전국 371개의 지정섬 중 여객선·행정선·노돛길·연륙교 등 대체수단이 없는 섬은 35개임 ([참고1])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섬지역 주민의'에서 개정안에 따른 '섬지역의'로 변경됨에 따라 섬지역 주민의 가족(외지인) 등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섬지역 주민의 가족 등이 1년에 2회(구정 및 추석 연휴) 방문한다고 가정하여도 지정섬의 인구가 많지 않으므로 5톤급 선박으로 운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5) 세부사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4-300)사업의 내역사업인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사업(2024년 20개 항로 대상 9억원 편성)으로 행정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항로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⁶⁾
-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및 예산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신규 선박을 매년 7척씩 5년동안 구입·건조하는 비용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선박구입·건조비용 8억원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각각 152억 4,800만원씩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의 여객 운송을 위해 활용하는 행정선의 구입·건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8억 5,0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304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 부담	2,925	2,986	3,049	3,113	3,175	15,248
지방자치단체 부담	2,925	2,986	3,049	3,113	3,175	15,248
합 계	5,850	5,973	6,098	6,226	6,350	30,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2.0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1] 지정섬 중 해상교통 소외섬 현황

□ 지정섬 중 대체수단이 없는 섬 현황

- 지정섬 중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고, 노들길·연륙교·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 등 대체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섬은 35개소로 파악됨

[지정섬 중 대체수단이 없는 섬 현황]

광역자치단체 (도서수, 개)	기초자치단체 (도서수, 개)	도서명
충청남도 (2)	서천군(1)	유부도
	태안군(1)	외도
전라북도 (3)	군산시(1)	죽도
	고창군(1)	내죽도
	부안군(1)	거륜도
전라남도 (20)	여수시(6)	소록도, 대록도, 대운두도, 추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고흥군(3)	수락도, 첨도, 진지내도
	보성군(1)	지주도
	영광군(1)	대각이도
	완도군(7)	다랑도, 우도, 원도, 장도, 노록도, 어룡도, 예작도
	진도군(2)	상구자도, 하구자도
경상남도 (10)	통영시(7)	오곡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 갈도, 납도
	거제시(1)	고개도
	고성군(2)	와도, 자란도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와 「개발대상도서지정」(행정안전부 고시 2018-20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